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

국제도산 프로젝트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가간의 국제도산사건에 있어서의 협력원칙

부록 2 :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사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2000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미국법률협회 77차 연례회의에서의
토론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미국법률협회 회원들에게 제출함

The Executive Office
The American Law Institute
4025 Chestnut Street
Philadelphia, Pa. 19104-3099

2001년 2월 12일 수정

부록 2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사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서론:

국제적 사건에 관한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사건에 관계된 국가들의 관리당국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법원은 파산절차와 재건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독법원들이 도산기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서로 협력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도산절차에 있어서 관련된 재판관할당국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이 외국에 있는 법관이나 관재인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신뢰성과 적절한 절차 보장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그 절차가 투명하고 명백하게 공정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소송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간의 의사소통은 국내 사건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고 더 민감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의사소통을 권장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관계당사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면서, 도산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신속한 협조를 허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의 가이드라인은 오로지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법원간의 의사소통을 권장하는 규칙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멕시코법원은 그 관재인(Sindico)이 외국의 관재인이나 법원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는 법원은 - 전부를 적용하든지 일부를 적용하든지,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든지 그대로 적용하든지 - 적용하기 전에 정식으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법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고, 다른 법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때까지 임시로 승인할 수도 있다. 법관들, 대리인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행위기준에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승인법원은 다른 법원들이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준속의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가이드라인의 승인은, 국내절차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절차적 결정을 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고지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다른 법원과의 의사소통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긴급 또는 비상상황하에서 이용되는 절차(고지요건을 포함한다)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더 고려한 다음에 최초의 효력발생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당사자들(예컨대, 모든 당사자들 또는 대표당사자들 또는 대표대리인)에 대한

의문사항과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심사의 성질(예컨대, 신문을 거치는지, 거치지 아니하는지)은 각 재판관할당국의 절차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하지 않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 사건의 상황에 맞도록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국제도산사회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관한 경험을 축적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로지 국내절차 및 국내의 윤리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적용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재판권지역의 법률과 관습에 의존하는 절차·고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도산에 관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고도로 유용하게 보이는 접근방법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정을 거쳐 - 이 가이드라인의 이용을 권장하는 바이다.

가이드라인 1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과의 의사소통에 앞서서, 법원은 그러한 의사소통이 그 국가의 모든 적용가능한 절차규정과 부합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법원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전부를 적용하든 일부를 적용하든, 또는 수정하여 적용하든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든), 가능한 한 그 적용 이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법원간의 가이드라인의 조정은 바람직한 것이며, 두 법원의 공무원들은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이행에 관하여 가이드라인 8(d)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2

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 계속된 절차를 조정 또는 조화시키기 위하여,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법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3

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된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 계속된 절차를 조정 또는 조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재판권지역의 도산관재인 또는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4

법원은 정당하게 임명된 도산관재인이, 외국법원의 승인하에, 그 외국법원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그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조건하에서, 그 도산관재인이 외국 재판권지역의 도산관재인을 통하거나, 당해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하여 외국법원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5

법원은 외국법원, 또는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외국의 도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외국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이때 쌍방향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7에 따른다). 만약 법원이 외국의 도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일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국내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그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정당하게 임명된 도산관재인을 통하여 답변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6

어느 법원의 다른 법원에 대한 연락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a) 정식의 명령, 판결, 의견, 결정이유, 배서한 증서, 절차의 녹취서, 기타 문서의 사본을 다른 법원에 직접 송부하거나 전달하는 방법. 이때 법원은 사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 (b) 대리인, 또는 외국·국내의 도산관재인에게 당해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문서, 신청서와 답변서, 선서진술서, 날인증서, 개요서, 기타 문서의 사본을 다른 법원에 전달하거나 배달하도록 명하는 방법. 이때 법원은 사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 고지한다.
- (c) 전화, 또는 화상회의, 기타 다른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다른 법원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방법. 이때는 가이드라인 7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7

가이드라인 2와 5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법원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두 법원 중 적어도 어느 한 법원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는 한 :

- (a) 모든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는 의사소통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사전고지가 각 법원의 절차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행해져야만 한다.
- (b) 법원간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녹음되어야만 하며, 녹취서로 작성될 수 있다. 녹취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두 법원 모두의 승인하에 의사소통의 공식적인 녹취서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 (c) 쌍방 법원 중 적어도 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의사소통의 녹음 사본과 의사소통의 녹취서 사본,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식 녹취서 사본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재판절차에 관한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본들은 쌍방 법원의 모든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는 비밀보장에 관한 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d) 법원간 의사소통의 시간과 장소는 쌍방 법원 모두가 만족하는 시간과 장소이어야만 한다. 쌍방 법원 중 적어도 어느 한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각 법원의 법관 이외의 직원들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을 참여시키지 않고서도, 법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위하여 서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8

가이드라인 3과 5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법원과 외국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사이, 또는 법원과 외국 도산관재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법원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없는 한 :

- (a) 모든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에게는 의사소통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사전고지가 각 법원의 절차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에게 행해져야만 한다.
- (b) 의사소통은 반드시 녹음되어야만 하며, 녹취서로 작성될 수 있다. 녹취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하에 의사소통의 공식적인 녹취서로 취급될 수 있다.
- (c)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의사소통의 녹음 사본과 의사소통의 녹취서 사본, 녹음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식 녹취서 사본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재판절차에 관한 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본들은 쌍방 법원의 모든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는 비밀보장에 관한 법원의 적절한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d) 의사소통의 시간과 장소는 법원이 만족하는 시간과 장소이어야만 한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법원의 법관 이외의 직원들은, 당사자를 위한 대리인을 참여시키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위하여, 외국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 또는 외국 도산관재인과 사이에 서로 충분히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9

법원은 다른 법원과 함께 공동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심리에 관하여는, 다른 명령이 있거나 그러한 공동심리에 적용되는 사전승인된 의정서가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a) 각 법원은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심리절차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b) 일방의 법원에 제출되거나 제출될 증거 또는 서면자료는,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심리 이전에 다른 법원에 전달되거나, 일반적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자료의 다른 법원에 대한 전달 또는 전자적 시스템에 의하여 일반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의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하지는 않는다.

- (c) 어느 당사자를 위한 대표자에 의한 제출 또는 신청은, 그 대표자가 다른 법원으로부터 제출권을 특별히 허가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대표자가 출석하고 있는 법원에 대하여만 행해져야 한다.
- (d) 가이드라인 7(b)의 경우에 있어서, 질서있게 진술하게 하고 법원들의 질서있는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공동심리에 관한 절차적·관리적 문제 또는 예비적 문제에 관하여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동심리 실시 이전에, 대리인의 출석 또는 불출석하에, 다른 법원과 서로 의사소통을 행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 (e) 가이드라인 7(b)의 경우에 있어서, 쌍방의 법원이 모순되지 않는 조화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심리에 관련된 어떠한 절차적 또는 비실체적 문제에 관하여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은 공동심리를 실시한 이후에, 대리인의 출석 또는 불출석하에, 다른 법원과 서로 의사소통을 행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가이드라인 10

법원은,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판권지역의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조항을, 추가 증거 또는 인증등본 없이도, 진정한 것으로 승인하고 인정하여야만 한다.

가이드라인 11

법원은,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판권지역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은 그 개별적인 일자에 정당하고 적절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위 명령의 인정은 추가 증거 또는 인증등본을 요하지 않고 행한다. 다만, 법원은, 위 명령에 대하여 실제로 계속 중인 불복 또는 재심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하고 정당한 모든 의견유보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12

법원은, 다른 재판권지역에 속하는 법원에서 진행중인 절차에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당사자("비거주 당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송달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그 법원에서 진행중인 절차와 다른 재판권지역에서 진행중인 절차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위하여 송달되는 모든 통지, 신청서, 기타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 또는 팩스전송, 인증 또는 등기우편, 또는 사자에 의한 전달, 기타 법원이 명하는 다른 방법(다만, 그 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비거주 당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송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13

법원은 외국 도산관재인, 또는 다른 재판권지역의 절차에서의 채권자 대표, 또는 다른 재판권지역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허가하는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 14

법원은, 그 법원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절차의 정지가 그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 제출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 법원은 추가적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또는 조건하에서, 위 당사자가 다른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6과 7에 의한 법원간의 의사소통은, 법원에 제출된 신청이 다른 재판관할권에 있는 법원에서의 쟁점이나 절차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15

법원은, 쟁점 및(또는) 당사자에 관하여 공통점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쌍방 법원에 계속 중인 절차의 형태에 불구하고, 절차의 조정과 조화를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방법으로, 다른 재판권지역 법원과 사이에, 또는 위 법원의 권한 있는 대표자와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정의에 부합하는 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강제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재판권지역의 법원과 위와 같은 의사소통을 행하여야만 한다.

가이드라인 16

이 가이드라인하에서 법원이 발한 지시는, 앞서 기재한 목적들을 위하여 또는 국내절차와 외국절차 진행 중 수시로 발생하는 변화·진행단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정, 수정, 연장될 수 있다. 어떠한 지시사항도 수시로 보충, 수정, 변경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개정, 변경은 쌍방의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일방의 법원이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발령된 지시사항을, 쌍방 법원의 공동 승인 없이, 보충, 개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다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17

이 가이드라인하에서 체결된 협약은, 여하한 권한, 책임 또는 권위를 가지는 법원의 양보 또는 권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위 협약은 당해 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계속된 분쟁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및 청구의 포기 또는 당해 법원이나 다른 법원이 발한 명령의 효력
감소를 의미하지도 않는다.